Md.a.3
1995.5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

오는 6월에 있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선거는 장애인문제 해결의 일대 전환기가 될 것이다.

오늘의 한국 상황은 국민소득 만불, 국가경제총생산량이 세계1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참가 신청서까지 제출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4백만 장애인은 아직도 삶의 모든 영역과 부문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소외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4백만 장애인은 구체적이고도 현실성있는 장애인복지정책 입안과 집행에 대한 통제 및 감시의 기회를 갖게 될 지방자치제를 장애인복지 발전의 커다란 전환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대협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목소리나 문제제기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도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를 만들었다.

이 책은 영역별, 부문별로 현재 4백만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만들었으며 이 토대 위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값 5,000원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17개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공대협은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 등 관련 정책개발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며
4백만 장애인의
일치된 생각과 의지를 실천하는
장애인복지계의 결집된 힘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발간에 즈음하여

그 사회가 어느정도 성숙했느냐 아니냐는 장애인복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1만불을 바라보고 있고 국민경제총생산량이 세계 12위에 달하며 경제협력기구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참가 신청서까지 제출한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400만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소외와 편견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지난 대구 가스폭발 참사를 비롯하여 계속 발생시키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오남용, 공해문제 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개인은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구조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를 살펴보면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장애발생과 장애인문

제를 사회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도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UN은 보다 발전된 사회를 위해 장애인을 시혜적인 대상에서 완전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갖고록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을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UN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도 이제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완전 참여'와 '평등'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는 장애인복지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공약제시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연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정책공약을 개발할 때라야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자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공명선거도 중요하나 더욱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요인은 정책대안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대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지자제선거에 입후보한 각 후보자나 각 정당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오랜기간동안 쌓아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고 일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1995년 5월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차례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45대 과제 • *11*

■ 장애인복지 부문별 과제

장애인교육 • *23*

장애인과 의료 • *32*

장애인과 고용 • *36*

장애인과 사회환경 • *42*

장애인체육 및 문화예술 • *46*

복지서비스 • *49*

■ 지역별 과제

서울특별시 • *57*

부산광역시 • *62*

대구광역시 • *76*

광주광역시 • *90*

강원도 • *97*

전라북도 • *111*

경상남도 • *119*

제주도 • *131*

■ 부록 • *139*

1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지역별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1.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교육대상자를 파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 장애인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등록장애인 수는 33만여 명으로 약 20%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홍보 부족과 실질적이지 못한 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장애인 자신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3. 장애인과 보호자 또는 담당의사는 신생아나 중도장애인 발견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시행규칙 9조를 근거로 장애판정위원회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조속히 설치하며 장애등급 사정 기준이나 진단방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진단 의료기관으로 하달할 수 있도록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5.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는 지역은 조속히 구성하며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단기적 계획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결정을 통해 실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 일정 비율 장애인이 참여하여 지방의 시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과'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계' 단위의 장애인복지관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장애인교육*

8. 장애인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출현율에 비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아동이 태어나서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보호, 그리고 재활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9. 장애아동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지방 재정의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화와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학령기 장애인의 정확한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 인구의 특성을 학령별, 장애별, 장애정도별로 분석하여 장애인교육여건 수립에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병원 그리고 가정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순회교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사립학교 제반 여건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고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유휴시설(남는교실) 등을 활용하고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11. 시·군 단위의 특수교육 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유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교육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살기운동을 전개하며, 학부모 교육, 장애인알리기, 학생들에 대한 순회강연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12. 정서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정서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정서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방법

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급을 신설하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3.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시·군·구와 같은 기초단위까지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모든 장애인교육의 중심이 시·군·구 심사위원회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시·도 심사위원회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위원회에 장애아동의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모든결정에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14.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모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수 있는 유치원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을 공교육화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유아를 치료하거나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전문기관으로 전면 양성화해야 한다.

15.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6. 장애학생이 학교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문직업교육과정(전공과)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수학교는 사업주의 요구에 알맞는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내의 사업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내의 특수학교에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의료*

17.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와 보장구 기구 등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18. 지역 사회 중심의 의료 재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재활병·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사무소,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재활사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재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19. 복지관의 순회진료시 장애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등록진단기관화시켜서 복지관 순회진료사업시 적재 적소에서 장애인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0.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의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장애예방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1. 중증재가장애인의 진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조직과 인원을 증원한다.

현재 1992년부터 장애인의 의료재활 등을 위해 15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순회재활서비스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설립목적(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3)과는 달리 그 업무내용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인원이 극히 적어 실적이 미비한 형편이다. 따라서 조직과 인원을 증원하여 재가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치료의 길을 확대해야 한다.

▶ *장애인고용*

2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율 2%를 이행한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2% 의무고용율을 이행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기업까지 확대한다.

23.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한다.

300인 이하인 소규모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전문직업훈련소를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반 전문직업훈련소에도 장애인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다.

24.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고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25.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생산품

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해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면세조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26. 중증장애인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매점, 자판대 설치, 복권판매소 설치, 자동차번호판 제작 등의 자영업을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한다.

27.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28. 장애인고용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29. 직업평가센터 설치 및 직업훈련 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진단·평가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어도 시·군·구별로 직업평가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30.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장애인고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작업공정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기반한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장애인 스스로 일할 권리를 찾아가야 한다.

▶*장애인접근권 확보(편의시설 등 사회환경)*

31. 지방건축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강화시킨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짓는 건축을 허가할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33.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특별할당 분양을 하며 시·군·구단위에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설치해야 한다.

34. 장애인 이동을 위해 일정비율의 리프트버스(휠체어 탑승)를 운행한다. 신호기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를 전면 설치 운영한다.

35.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는 수화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영상매체 TV자막 및 수화통역을 반드시 삽입하고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을 설치한다.

36. 장애인 복지모델 도시 만들기 캠페인 등을 제도적으로 펼쳐야 한다.

37.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의 지방조세(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세감면이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보장구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39. 정부차원에서 보장구 지급 및 수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의 육성 및 현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제작업소에 대한 지원과

적절한 지역간의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유사공구 기계수리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장애인 시설*

40. 지역단위별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기회 확대를 위해 시·도 장애인복지관 및 분관 등 이용시설을 증설해야 하며 일반 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41. 장애인 전용 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있어서 운동은 일반인의 스포츠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신체적 기능을 보강할 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리치료 공간을 겸한 전용 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간은 장애인을 위한 대규모 행사에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의 여유 등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42.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적으로 순회개최해야 한다.

금년 15회째로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매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만 개최되어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떨어지고 있다.

장애인체육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저변확대,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지방순회개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3. 자원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학교·학생의 자원활동을 유도하며 지방의 기업이 사회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원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44. 지방자치단체는 각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예산확대*

45.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원확보에 달려있다. 따라서 경상예산으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방복권 판매나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복지는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장애인복지 부문별 과제

장애인복지 부문별 과제

장애인과 교육

1.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위한 실태 파악을 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취학연령에 있는 전체 장애인의 추정치가 3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그 수혜율은 겨우 20%를 조금 웃돌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학교의 취학률조차도 각각 19.7%와 11.97%로 나타나 그 동안 장애인교육이 얼마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다시말해 장애아동이 집안에 방치되거나 교육연령이 되었음에도 여러가지 여건상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취학연령의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지난 93년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면제조항인 교육법 제98조가 개정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초·중등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이 명문화되었다.

2) 개선방안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 그 지역 학령기 장

애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 재정의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에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장애인 인구수는 거의 외국의 통계치를 적용하였거나 일부 표집에 의한 추정치에 불과하여 그 신뢰성이 빈약했다. 따라서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학령기 장애인의 정확한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 인구의 구성을 학령별, 장애별, 장애정도별로 분석하여 장애인 교육 여건 수립에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조치보다 시급하고 현명한 조치라고 하겠다.

2. 장애아동의 완전 의무교육 실현을 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지적했듯이 장애아동의 의무교육률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1)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소규모 학교를 지역적으로 분산 신설)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병원, 그리고 가정에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순회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3) 일반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병설특수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4) 특수학교의 특수시설(요육, 직업) 및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며 사립학교 여건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고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3.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의무교육이 돼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유치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로 규정해놓고 있어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장애유아가 다니는 학교 내의 유치원 과정은 무상으로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교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유아는 일반 사설 조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정경제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유아가 교육을 받고 있는 조기교육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단체 부설 교육시설(약 39개, 교육비 월 6-10만원), 언어치료 교실(약 33개, 교육비 시간당 약 10만원 이상), 조기교육시설(약 139개, 교육비 월 20만원-25만원), 병·의원 부설 치료교실(약 16개, 시간당 약 10만원 이상), 종교단체 부설 조기교육기관(약 27개, 교육비 월 12 - 20만원) 등 평균적으로 한달에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선방안

(1) 장애아동에게 조기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왜냐하면 0세, 즉 장애발견 즉시 교육을 받게 되면 장애극복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특수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유아도 일찍이 교육을 받고 교육가능급의 아동이 됨으로써 자아실현

의 기회를 갖고 성인이 되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애유아를 치료하거나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기관으로 양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치원과정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치원 과정 이전의 장애유아 교육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시·도 특수교육심사위원회 활성화돼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1993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를 보면 시·도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심사, 취학할 학교의 지정·배치,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그리고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시·도 심사위원회 수준에 그쳐 버려 옛날과 같이 형식적인 조직체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장애아동이 도청이 있는 수원시까지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개선방안

따라서 기초단위인 시·군·구 심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이 제도를 통해 시·군·구 특수교육심사위원회는 지역 내에 있는 장애아동을 쉽게 찾아내어 지역내에 있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내의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 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취학하지 못한 중증장애아동이나 학교에 다녀도 능력에 알맞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증장애아동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부분이다.

5.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면 특수학급의 교육을 활성화함은 물론 학령기에 있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정규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즉 담당교사의 이해와 교우들의 수용, 그리고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장애에 따른 물리적인 어려움 해결(점자화된 교재, 휠체어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등)이 그것이다. 이때 소속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다면 이들의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으려면 지역에서 이사를 하거나 먼 거리를 통학하고, 또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장애아동의 부모는 장애아동이 지역 내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로 통합교육의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특수학교를 짓는 것보다 남아도는 일반학교의 교실을 활용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특수교육의 기본원리인 통합교육에도 부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쉽다. 따라서 지역에서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가 가벼운 아동들도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지 않고 일반학급으로 돌아가 장애아동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아동이 지역 내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학생수에 따라 특수교육 전담교사의 배치가 불가피하게 되며 이러한 특수교육교사의 배치로 일반학급 내에 있는 장애아동들은 능력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또한 일반교사들도 장애아동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통합의 정도는 항상 그 소속 집단의 의식전환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관건은 학교 사회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돌이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은 나서서 지역사회를 향한 더불어 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부모 교육, 장애인 알리기, 학생들에 대한 순회 강연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도 역시 그 좋은 예가 되리라 믿는다.

6.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과 개별화 교육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집권체제 방식에서는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와 독특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채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장애 개개인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 다시말해 개별화 교육이 가장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과 개별화 교육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교육자치의 실현은 학교 운영이 민주화되어 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관료주의적인 학교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벗어나 학생중심의 교육내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학부모들이 교육내용에까지 참여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서비스(특히 치료교육)도 강화해야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과정, 운영자료의 개발·보급 확대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7. 직업교육의 강화와 취업률을 확대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각 특수학교 내에서는 직업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예, 도장 등 사향산업 중심인데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받은 장애학생이 학교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선방안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에 알맞는 보다 전문적이고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 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장애학생이 지역 내에 취업하여 자아실현과 생활의 윤택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는 사업주의 요구에 알맞는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타 시·도에 취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지역 내의 사업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내의 특수학교에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특수교육 담당교원 및 지원체제를 명문화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 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많아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폐단으로 손꼽힌다. 특수교육 교사의 유인책도 매우 미비하여 일반학교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부족,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 등 요육교사의 부족, 현직 특수교육 교사의 지속적인 교사연수 기회의 부족, 승진 및 타 학교와의 인사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수교원을 양성하고 교육복지를 개선하며 모든 일반 교직원 연수시에는 특수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연수 ▲장애영역별 자율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학교 교원의 업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하고 교과전담 교사를 완전히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한편 이 모든 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9. 특수학교 여건의 개선 및 시설의 현대화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수교육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립학교인 특수교육 관련 시설의 낙후성은 매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이를 위해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학급별, 장애유형별 장학이 가능하도록 보강하는 한편 특수학교 학부모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10.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통합교육 등 장애아동의 총체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장애아동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개선방안

이를 위해 일반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장애인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특수학교와의 상호간에 교육적 교류기회를 제도화(교구, 설비 기준안 제정)하며 특수교육을 위한 교구, 시설, 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장애인과 의료

1. 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의료재활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의료재활이 잘 이루어지려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과 전문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필요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재활이 잘 이루어지려면 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재활치료를 비롯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야할 지를 모른다거나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멀리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의료보험인데 의료보험상에는 구조적 문제와 진료숫가의 저렴, 그리고 진료급여대상에서 보장구는 제외되는 것과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1992년 현재 전국에는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가 2백69개, 읍·면단위의 보건지소가 1천3백31개소 그리고 리 단위의 보건진료소가 2~39개소가 있으며 자연부락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건조직이다. 그러나 보건소는 행정조직상 내무부 소관이며 일반복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행정체제의 개편이 시급하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21곳이 있으며 앞으로 시·도에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게 된다면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험을 토대로 장비와 인원을 보충하여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의료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대략 약 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1990) 그러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곳은 55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20%미만이며 30병상 이상을 갖고 있는 재활병원이 국립재활병원을 비롯하여 7개, 재활의학 전문의원이 전국에 약 32개소뿐이며 21개의 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같이 의료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매우 적으며 더구나, 이들 기관들이 주로 대형도시를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정확히 평가받고 적합한 재활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장애인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지자제 실시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내의 장애인의 장애심사와 평가, 전문요원의 양성 및 훈련, 장애의 예방 및 조기진단, 재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역재활조직의 육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재활, 또는 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료재활센터는 시 또는 구·군 단위로 지역의 크기, 상주인구 등 필요에 따라 그 수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센터건립에는 막대한 예산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센터건립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강화시켜 의료재활센터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행의 기능을 추가하여 조직, 시설, 장비, 요원 등 모든 면에서 확대 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의료재활에는 재활의학 전문의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의지 및 보장구 제작사(이하 보장구사라 함),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재활간호사 등 여러 직종의 전문요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중 언어치료사, 보장구사 등은 아직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4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백87명의 재활의학 전문의가 있으며 42개의 수련병원에서 1백92명이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데 매년 5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될 전망이다. 또한 1994년 현재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교육기관은 3년제 전문대학 14개와 4년제 대학 4개(주간 2, 야간 2)가 있으며 국시에 합격하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9천1백12명이다. 매년 18개 학교에서 약 1천2백여명이 졸업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을 가르칠 교수진의 부족과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없어 전문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는 점이며 그 수가 이미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는 점이다. 현재 자격증을 가진 작업치료사는 2백68명이다. 그러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작업치료에 대한 너무 낮은 의료보험숫가 책정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작업치료실의 개설을 꺼려하고 있으며 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언어치료사나 보장구사 등도 자격규정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으며 언어치료는 의료보험에 급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고, 보장구사도 전문적인 양성과 자격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선방안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문가 양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전문의를 제외하고 재활치료에 필요한 언어치료사, 보장구사 등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자격제도조차도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제도와 전문적인 양성제도, 그리고 법적 장치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중증재가 장애인의 진료가 확대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에서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며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 현재 1992년부터 장애인의 의료재활 등을 위해 15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순회재활서비스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설립목적(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3)과는 달리 그 업무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실적이 미비한 형편이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조직과 인원을 증원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치료의 길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중간 단계의 의료재활 기관을 건립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입원하려는 환자가 많아 장기간 입원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계로 중풍, 척추손상 등 비교적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장애인 중에는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도 없고 막연히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2) 개선방안

따라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입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갈 처지도 못되는 사람들이 퇴원 후 얼마동안 요양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중간단계의 의료재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간단계의 의료재활기관에서는 적은 수의 전문요원만으로도 충분히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과 고용

1. 직업평가센터 설치 및 직업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비장애인과는 달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장애의 정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 특징, 현상들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개별화하여 의료, 교육, 심리, 사회, 직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직업적성평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나 전문가가 배치된 기관은 한곳도 없고 단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와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재활원에서 단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지방화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문제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진단과 평가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어도 시·군·구별로 평가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각 시·도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이 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고용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난 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3백인 이상의 기업체로 하여금 종업원의 100분의 2이상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94년말 현재 장애인고용율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모두 1%를 훨씬 못 미치는 0.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보다 앞서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기업체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을 독려하고 계몽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을 회피하고 있고 더구나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시급히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1)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기준고용율을 준수하고 그 이상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과 지도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지금까지 장애인고용을 해온 업체를 보면 적용 대상업체 외의 30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이다. 따라서 이들 소규모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주고 있는 고용장려금외에 지방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달품의 수의계약 같은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 보다 지속적인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고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존의 보호작업장 지원 및 중증장애인 고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거쳐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의거 근로시설 및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28개, 경기 22개, 부산 20개 등 전국적으로 약 1백60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보호작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경증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계업체 선정시 원청보다는 재하청이 많고 또한 자체 생산품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아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보호작업장의 약 70%정도 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의가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중증장애인의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보호작업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다음과 같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자체생산품을 생산하는 보호작업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면세조치 및 시설의 지원 등 적극적인 배려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중앙정부차원의 보호작업장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작업장이 활성화 되고 중증장애인의 훈련과 취업의 장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직원의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호작업장과 연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혜택이나 영업상의 배려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작업장의 대상 장애인이 있다면 필요한 만큼의 시설을 증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작업장과 같은 시설 내의 고용 외에 시설 외의 고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지방자치시설의 승강기 조작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징수요원, 의회속기사, 청소원 등과 같은 직종을 유보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나 권장지침을 시달하여 중증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중증장애인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매점, 자판대 설치, 복권판매소 설치, 자동차번호판 제작 등의 자영업을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기업주의 장애인 채용기피 이유를 보면 시설개조나 부가적인 장비지원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들 것이라는 생각때문인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간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고용지원금이나 장려금, 시설장비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자금융자, 차량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부분에 있어 아직 미흡하다.

2) 개선방안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일정기간 고용에 대한 임금을 보조해서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일시유예기간제도나 교통비보조, 대독서비스, 통역서비스, 특수장비에 대한 무이자 영구대출, 중증장애인에게 일대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 훈련 교사 배치, 주거비지원등 각종 지원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단체를 적극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고용전달체계의 재구성 및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장애인고용 전달체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지회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각 시·군·구 등에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불명확하다. 또한 분리되어있는 각 창구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나 배려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조차 적당한 직장을 찾지 못해 60%의 이직율을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실업상태에 있다.

2)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장애인고용에 관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이다. 현재와 같은 체계라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혹은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전담창구로 지정하고 기타 관련기관은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장애인고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서로가 되돌이(feed-back)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고용전산망구축 및 온라인(On-Line)서비스를 실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고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중심의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정립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고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비장애인에 관한 고용 정보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전국의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공유되고 있으나 장애인은 아직 전산망 구축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장애인이 서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전제도 없

이 서울에 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모든 장애인고용관련기간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표준화하여 전산화하고 또한 전산화 된 자료를 전국 어디서나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현 체계에서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방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고용에 관한 원시자료 수집-가공 -온라인(On -Line)서비스실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애인과 사회환경

▶*물리적 환경개선*

1. 지역 단위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과제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시책을 적극 펼쳐야 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공공기관 출입을 제약하고 있다.

2) 개선방안

(1)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 및 산업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교통시설 등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 설치한다.

(2) 경사로, 출입문(자동),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등 각급 공공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준수한다.

2. 장애인에게 주택에 대한 특별할당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 건설과 분양과정에서 장애인 특별분양제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특별할당분양한다.

3.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건립한다.

장애인의 신체부위의 노출상 문제 및 편의시설의 미비로 대중목욕탕 이용이 곤란하므로 시·군·구단위 1개소 이상의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건립한다.

4.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한다.

(1) 버스를 개조한 리프트버스(휠체어 탑승) 운행, 지방 지하철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등 지역단위의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한다.

(2) 횡단보도의 보도턱 낮추기, 신호기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전면 설치·운영, 신도시 등 개발도시 육교(경사로) 설치로 지역단위의 교통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문화적 개선*

5. 지방영상매체와 TV에 자막 및 수화통역을 삽입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95년 지역민간방송 및 유선방송의 개국으로 인해 TV영상매체가 다양하게 시청자들에게 접근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TV를 통해서 소리로 전달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2) 개선방안

(1) 광역단위 민간방송 TV, 기초단위 유선방송 TV, 문자자막 방송 및 수화통역을 삽입한다.

6. 시각장애인 정보전달의 체계를 개선한다.

(1) 지역정보 전화사업(한국통신 각 지방지사) 실시

- 전문전화 정보센타 설치 : 지방 중·소도시

(2) 점자·녹음서 출판 및 열람시설 설립

- 지방자치단체별(광역)로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 (특수도서관) 설립

▶*사회적 환경개선*

7.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를 강화한다.

(1) 장애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

(2) 지역 민간방송 등 영상 및 문자매체를 통한 장애관련분야 홍보

8. 지방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1) 시·도자문위원회, 시·군·구자문위원회, 기타 각종 개발자문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등에 지역장애인의 참여를 일정비율 당연직화 한다.

9. 지방주민행사에 장애인 참여를 유도한다.

(1) 지역주민체육대회, 단합대회, 민속문화축제, 관광축제 등 지방민간문화행사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군·구민의 날 기념축제 등 지방행정기관 주최 행사에 장애인을 참여시킨다.

▶*행정적 환경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 행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제가 현재 광역(서울, 부산, 대전 등)자치단체 중 3개소에 불과하여 장애인복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없다.

2) 개선방안

(1) 광역자치단체『과단위』전담직제 설치

- 특별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설치

(2) 기초자치단체『계단위』전담직제 설치

- 시·군·구 : 장애인복지계 설치

11.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1) 현황 및 개선방안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의해 시·도지사 아래의 자문기관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충북·제주 등에만 구성되고 나머지 지역은 구성, 운영되지 않고 있다.

2) 개선방안

(1)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운영한다.

- 1/3이상 장애인 위원 참여
- 활동 : 지역 장애인복지정책의 심의 및 건의

장애인체육 및 문화예술

1. 장애인체육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에 있어서 체육은 단순히 즐기는 그 자체외에도 장애부위의 기능감퇴를 예방하고, 나아가 잔존능력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적 효과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체육관 신축비나 운영비에 국한되어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된 체육행사와 시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단위에서만 실시되는 관계로 지역단위의 참여가 곤란하다.

2) 개선방안

(1)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체육은 재활체육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적어도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재활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체육시설은 전국에 7개소가 있으나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사회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장애인들도 이용가능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2) 장애인체육활동은 재활의 주요한 수단이 되므로 체육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장애인경기지도자, 심판원 등 장애인 체육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도 지역별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3) 장애인체육의 지역별 균형있는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지방순회개최하여야 한다.

매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었기때문에 장애인체육의 균형있는 발전과 저변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심제고 및 국민의식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지방순회개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지역별로 장애인들이 스포츠, 레크레이션 및 문화활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그 질적인 충실을 도모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장애의 종류를 초월하여 연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를 갖지않는 사람과 함께 참가하는 기회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년 1회이상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정기적인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

1) 현황 및 개선방안

장애인의 경우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소일하는 정도일 뿐 여타의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은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부진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소질과 능력을 키워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 갈 수 있도록하는데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 장애유형별로 적성에 알맞는 예능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전국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는 해당 부분별 문화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최하고 소요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한다.

(3) 각 시·도·구 단위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문화원에서 장애인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토록 한다.

(4)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에 문화공간을 할애하여 문예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사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해를 증진시킨다.

(5) 지역별로 장애인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후원하게 한다.

(6) 각 시·도에 종합적인 기능의 장애인문화센타 1개소씩 설립하여 운영하며, 모든 공공문화시설에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7) 장애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는 각각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레저, 오락 또는 게임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민간 여행사와 협조하여 장애인에게 맞는 휴가여행프로그램 등을 개발, 실시해 나가고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음악회나 각종 전시회 등을 관람하는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할인, 국민관광단지의 입장료 면제 등을 통하여 문화생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

1. 중증요양시설이 중간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에 있지만 장애가 중증인 경우는 시설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요양시설이다. 현재 장애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2백16개에 약 1만6천4백63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데 시설 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 56개, 수용시설 1백60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지역에 약 50%가 편중되어 있다. 또한 수

용시설의 경우 단순한 무연고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1백6개이고 이 중 중증장애인을 수용하여 치료하는 요양시설은 46개에 3천2백61명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별로도 서울 8개, 경기 7개, 대전이나 인천지역은 1개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수용장애인이 중증이기 때문에 단순 요양뿐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수급이나 장비 수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요양 외에는 서비스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1) 지역사회는 가정을 기초로 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주는데 한계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최소한 시·군·구별로 적어도 1개 이상의 소규모 요양시설(20~30명 수용)을 설치하도록 한다.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은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급하고 지역사회의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중간시설 및 이용시설과 재가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요인의 증가, 장애범주의 확대 그리고 지방화의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하의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중증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장애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각 시·도별로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도나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애아 탁아시설의 경우도 현재 전국적으로 6천86개나 있지만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장애아를 둔 가정은 2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1)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1개 이상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히 진단과 정보기능을 전담 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선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있는 읍·면·동 단위의 국·공립탁아시설은 장애아를 위한 탁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관리해 나간다.

3.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소득보장책을 강구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소득보장의 핵심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일인데 지금까지의 장애인 소득보장은 생활보호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다른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거주하는 장애인세대의 경우 4인 가족 1가구 최저생활금이 74만원임과 특히 장애인의 경우 생활비 외의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장애인가족은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복지수당이나 보호수당, 부양수당 같은 보충급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보호를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고용대책이나 자립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사업 단위별로 필요한 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시달하면,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전달되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체계이기 때문에 연계성과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담당하는 인력이 전문인력이 아니고 수직선상 즉 복지부산하에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전달이 어렵게 되어 있다.

2) 개선방안

(1) 1998년부터 보건복지사무소를 본격 설치,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언제 시행이 될지 예산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장애인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3)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에서는 읍·면·동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 및 생활용품의 지원을 적극 강구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보장구나 생활용품은 장애인의 생존과 관련된 신체의 일부분이고 장애를 보완해 주는 필수적인 용품이다. 현재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품은 약3백50여 개가 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급하고 있는 용품은 휠체어, 목발, 의수족, 보청기, 흰지팡이 등 5가지밖에 되지 않고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도 보장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는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접근 자체도 어렵게 되어 있어서 장애를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립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급하는 보장구의 종류를 확대하고 저소득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에게도 보장구나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지역사회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역사회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그 동안 장애인관련시설 예를 들어 1991년 천안인애학교 및 1993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민건립반대와 장애인에 대한 입학거부 등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여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기본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비장애인의 인식문제임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면 장애인도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먼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계몽이 따라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1) 반상회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언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장애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개발한다.

7. 재원확보방안으로 특별기금을 마련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장애인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적인 경상예산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에 당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2)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는 경상예산으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마련한다.

(2) 지방복권판매나 복지세를 신설한다.

3

지역별 과제

지역별 과제

서울특별시

1)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한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 따라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상설화시키야 하며 그 임무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단기적 계획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결정을 통해 실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2)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서울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기초조사가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도단위나 시·군·구 단위로 학령기 장애인, 노동 가능한 장애인 수를 파악하여 교육과 고용 등 모든 영역과 부문에 걸친 정책입안, 시행,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서울시에 '과'단위, 각 구별로 '계'수준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를 설치

하여 구체적이고도 현실성있는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서울지방자치단체는 내실있는 장애인복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지방정부는 편의시설추진계획을 매년 내실있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2) 각 시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3) 장애인고용에 관한 행정지도를 책임있게 한다.

5)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심사와 취학할 학교의 지정 배치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현행 서울특수교육심사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서울시에만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각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장애인교육의 중심이 구 심사위원회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시·도 심사위원회는 지원을 해야 한다.

6) 서울시 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백여개가 넘는 특수학교와 삼천여개가 넘는 특수학급, 전국적인 하위 조직을 둔 특수교육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의무교육의 실현 등으로 넓혀진 장애인교육 행정을 교육부 보통교육국 유아교육과에서 2인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부서인 (가칭)장애인교육과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조기교육의 의무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한다.(특수교육법 제8조에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

(2) 장애 유아를 치료하거나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 기관으로 양성화한다.

(3) 유치원 과정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조례의 신설로 지방 조기교육의 활성화를 꾀한다.

7) 건축위원회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이동과 각종 시설에의 접근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일반 건축물, 그리고 공공건축물 등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다행히 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마련, 95년 1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관련 법들과의 연관 문제와 생활시설까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 강제력을 갖기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부서의 미비로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가 된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주된 역할을 알아보면, 직할시, 도, 시, 군 및 구에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주된 역할은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 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관련법(법 제8조 2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현재 구성은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은 대게 행정담당자,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기타 관련부서에서 파견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들과의 통합,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데

주력한다.

8)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1) 관련법의 해당조항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2) 전문화된 연구와 시설의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점검한다.

(3) 기술적으로 지도 및 자문을 담당한다.

(4) 장애인복지모델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제도적으로 펼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5)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9) 장애인 주택 정책이 현실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1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을 보급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2) 영구임대주택와 시영아파트의 분양을 우선한다.

(3) 공공주택의 1층은 장애인에서 우선하여 분양한다.

10) 각종시설의 접근을 보장한다.

(1)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입장한다.

(2) 공공건물에는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게 한다.

(3) 장애인운동능력 측정기를 도봉, 강남면허시험장까지 확대한다.

11) 장애인 의료재활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소가 행정조직상 내무부에 속해 있어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소법에 따르면 보건소의 업무에 장애인의 재활(6조8항)에 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서 보건소내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재활요원으로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1) 보건소에서는 지역내의 장애인의 장애판정과 평가, 전문요원의 양성 및 훈련, 장애의 예방 및 조기진단, 재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역 재활조직의 육성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기존의 이분화된 체계로부터 통합을 시켜서 복지부 산하에 보건소를 두되,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복지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3) 조직, 시설, 장비, 요원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

12) 각종 조례를 제정한다.

(1) 경제적인 지원촉진

① 장애인복지법 16조에 의거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공공시설내의 매점·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준다(장애인복지법 제 26조)

③ 시청, 구청, 산하기관, 공공시설물, 각급학교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한다.

(2) 장애인고용 촉진

① 공공단체는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인를 반드시 고용한다.

②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지역의 복지관이나 자립작업장에 하청을 주고 장애인 및 시설에서 제작한 물품을 우선하여 구입한다.

③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자립훈련비등을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1.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시행령 3조 2항과 4조에서 심의내용과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

2) 개선방안

(1) 부산장애인복지위원회를 부산 광역시장 직속으로 상설화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조에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⅓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 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 시내 장애인 단체의 장(長) 중 지·맹·농·정신지체 단체의 장(長)과,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3개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교수 각 1명, 시 장애인 담당 부서의 長(국장급), 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 의원, 기타 부모회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부산장애인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공간이 필요하며 각 의결 사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현실성있는 장애인복지의 실시와 부산 지역 단체들간의 입장 조율이 용이할 수 있으며, 부산 장애계에서 부족한 각 정책적 사안별로의 공통된 협력이나 견제하는 분위기로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 장애계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2. 장애인등록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유엔에서 발표한 장애인 수치에 대한 기준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장애인 수는 1993년말 38만6천8백명이 되나 보건복지부가 1990년에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약 8만5천5백명(인구 1000명당 22.1%)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를 기준으로 적용해보더라도 부산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994년 12월말에 2만1천6백26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표1〉 장애인등록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지체	시각	언어·청각	정신지체	증가율 (%)
1991	15,496	10,265	1,070	1,863	2,298	
1992	17,511	11,893	1,261	1,991	2,368	13.0%
1993	19,786	13,697	1,382	2,175	2,632	12.9%
1994	21,626	14,891	1,564	2,250	2,540	9.3%

자료 :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과, 1994

이처럼 등록장애인 수가 추정되는 장애인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장애의 범주에 고혈압, 심부전증 등의 내부장애인까지도 포함하는 유엔기준과는 달리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또는 정신지체 등으로 장애범주를 한정하고 있고, 둘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기준으로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홍보부족과 실질적 복지서비스는 적은 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장애인 자신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선방안

(1) 장애의 범주를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 조례 등으로 점차적으로 넓혀간다.

(2) 시 보건복지국 산하에 부산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장애인복지법 제19조, 시행규칙 제9조) 부산장애판정위원회는 재활의학과가 있는 4개의 병원(고신의료원, 백병원, 봉생병원, 세일병원)에 있는 전문의들과 물리치료사, 장애 정도별, 유형별로 직능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직업재활학과 전공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서 장애등급 사정 기준이나 진단 방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 방안을 제시하여 일선 병원으로 하달할 수 있게 한다.

(3) 장애인등록의 의무화를 시 조례, 각 구의 조례로 만든다.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담당 의사는 의무적으로 신생아나 중도장애인 발견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다.

(4) 등록신청절차에 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5) 장애인수첩을 주민등록증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3) 기대효과

장애의 범주를 확대시키므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복지사업의 전제가 되는 정확한 인원과 장애정도의 파악이 가능하며, 장애인 각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기초자료가 된다.

3. 빈민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빈민장애인의 숫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편차를 보이겠지만 일단 시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산시에는 94년 현재 771명이 있다.

하지만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1급 장애 및 2급 중복장애인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의 취업현황이나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하면 실지 빈민장애인의 수는 몇 배로 늘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지로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시빈민 중 약 67%가 장애를 가졌다는 데에도 알 수 있듯이 그 숫자는 몇 만명이 될 지 모른다.

한달에 지급되는 생계보조비는 94년 현재 겨우 5만원이다. 이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 생계비(4인 기준 35만 8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

이다.

이들 장애인의 생계보장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크겠지만 현재 공공시설의 매점 등에는 주로 관(管)이나 기득권 계층과 연결된 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2) 개선방안

(1)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생계보조 수당 또한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조항은 시의 조례 등으로 제도화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요구된다. 이 사안은 빈민장애인의 생계대책 수준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제도화되어야 하며 특정 장애인 단체나 개인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나 심의는 이권 개입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어짐으로 철저히 공개가 되어야 함은 물론 그 업무의 관장 또한 부산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

3) 기대효과

빈민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조항이 제도화되어 현실화된다면 빈민장애인 삶의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용시설의 프로그램중 장애인복지분야가 확대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에는 95년 현재 27개의 종합복지관과 6개의 복지관이 있다.

복지관의 주요 기능은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를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관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산의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분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관의 실비 이용료 수납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 때문이고, 둘째, 전문인력의 부족, 셋째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의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재정의 부족이라는 측면이다. 장애인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동원되는 반면 그 반대급부의 사업 실적이라는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2) 개선방안

(1) 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복지라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인복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역 장애인의 구체적 욕구에 맞는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복지관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을 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의 업무와 법인의 업무가 분리되어야 한다.

3) 기대효과

지역 장애인의 사회 참여라는 측면에서 복지관의 장애인복지 확대 방안은 실질적인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5. 편의시설의 확충과 교통 대책 -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교통시설 기타 공동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모든 시민이 자유로이 드나들어야 할 관공서조차도 기본적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 94년에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의 적용 대상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그 계획에는 이미 설치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 및 정비 계획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시의 설치계획과 이에 따른 홍보, 계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이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2〉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단위 : 개)

횡단보도 유도바닥재	횡단보도턱 낮추기	공중전화	경사로	화장실	시각장애인 신호기	전용주차장	지하철유도 바닥재
135	242	105	261	313	122	264	56

자료 :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과, 1994

그리고 부산은 도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모여 사는 데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당연한 일일 테지만 그에 맞는 획기적인 해결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예로 한 장애인 단체에서 상담한 결과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교통문제라고 한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불법주차 단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개선방안

(1) 각 법률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한 규정들이 부산지역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

(2) 각 구 의회 단체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3) 이미 만들어진 지하철 1호선에는 장기적으로 맹인용 점자 유도블럭과 휠체어용 경사로와 리프트 시설 등을 늘려나가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2호선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대폭 늘여야 한다.

(4) 시내 모든 지역에 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지킬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5)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3) 기대 효과

부산에서도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시민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 문제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많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6. 장애인복지관련 이용시설을 확충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17개 수용시설에 94년 12월말 등록인원의 6.6%인 1,429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으며, 이용시설 2개소(장애인종합복지관, 맹인복지관)와 재활의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재활의료 및 여가활용, 스포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표3〉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

계	재활수용시설				용양시설	근로시설	이용시설		재활의원
	지체	정신지체	언어청각	시각			종합	단종	
20	6	5	2	1	2	1	1	1	1

자료 :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과, 1994

양과 질에 있어 낙후한 부산지역에서는 장애인이 일반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내 이용시설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복지 이용시설의 활용 및 증설은 장애인이 사회에 고립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참가를 조성하는 제반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산지역 전체를 담당하나, 1개소로써는 사업의 내용과 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에서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교육과 의료부분에 치우쳐 있어 종합복지관다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체육이나 문화시설과 같은 이용시설이 전무한 현실이므로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립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2) 개선방안

(1)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설한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도구, 북구, 동구 등의 지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야 한다.

(2) 장애인체육회관 및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증설한다.

3) 기대효과

장애인들의 다양해진 욕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보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7. 장애인 복지단체의 예산을 확대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을 종별로 보면 지체, 뇌성, 정신지체, 시각, 청각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995년 현재 부산지역 장애인관련단체 부산시 지원예산은 다음과 같다.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20,000,000원
* 부산광역시 재활협회 18,000,000원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20,000,000원
* 한국농아복지회 부산지부 10,000,000원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 27,000,000원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부 12,000,000원

계 107,000,000원

자료 :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과 재활계, 1994

현재 예산으로는 사무실 운영도 어렵다. 장애인 관련단체 종사자들이 부산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각 종별 대표 단체와 개별단체라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청년장애인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한울장애인자활센타〕와 성대절제수술을 받은 성인장애인들에게 식도발성법을 교육하는 〔신성회〕 등은 그 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예산도 지원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1) 국가 또는 부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명시된 단체의 보호 육성 조항을 시행하여 단체별 또는 사업별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8. 장애인업무를 사회과로 이관하고, 재활계가 장애인계로 바뀌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으로 아동, 청소년, 부녀, 노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고 생활도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장애인 업무는 사회과에서 맡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장애인 업무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산만은 가정복지과 재활계에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민원업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담당자 공무원의 이동이 잦아 담당과장은 몇 달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2) 개선방안

(1) 장애인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업무를 사회과로 이관하고, 재활계도 장애인계로 바꾸어야 한다.

(2)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장애인 업무 부서에는 특별 수당이나 가산점을 주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3) 장애인 관련기관이 증설되면 장기근속자는 시설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4) 공무원 연수교육에 점자 및 수화교육을 실시한다.

9. 정신지체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설치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정신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곤란한 사람들로 이들도 교육과 훈련에 의해 발전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은 간과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등록된 정신지체인이 2,500여명인데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정신지체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부산은 타시도에 비해 복지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며 이들이 학교교육을 받았어도 사회교육과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마저 무산되는 지경이므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해 줄 보호작업장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아울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룹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부산의 수용시설 17곳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자립장

에서 20여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에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10.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은 이동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의 현실이 중증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조차 이용할 수 없어 차량사용이 유일한 보행 수단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보행세, 즉 통행세를 받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기에 장애인의 보행세인 통행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차량은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통행세뿐 아니라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도 면제되어야 하며 1995년부터 1급~3급 장애인이 배기량 1500cc이하 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를 2,000cc까지 확대실시 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면제는 그동안 1~3급 지체장애인 자가운전자에게만 혜택이 있어 운전조차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도 면세해 주도록 각 장애인 단체에서 여러차례 건의한 결과 1995년부터 18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 1~4급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감면 받게 되었다.

정부에서 성인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통근차량에 편의를 주는 것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들보다 더욱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육이나 치료를 위한 미성년자들이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여거가지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1) 장애인 1종 운전면허의 조건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유료도로 통행세 및 각종 세금이 면세되어야 한다.

(3) 자동차세 면세범위는 최소한 2000 cc 까지 1~3급 전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나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4) 공영주차장은 100%, 민영주차장은 50%로 할인되어야 한다.

11. 공공시설의 매점 · 가판점이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장애인 생업지원 시책으로 공공시설의 매점 및 가판점 설치물은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광주직할시에서는 92년 8월부터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3월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

92년 11월 부산시 재활계에서는 조례로 제정할 것을 본회에 건의했으나 시행이 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되도록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조차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처만 바라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의 관련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대구광역시

1. 특수교육의 현실화를 위하여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제역할을 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에서 장애인교육기관은 특수학교 8개,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105개, 특수학급은 149개이며 장애유형별 학생수는 다음과 같다.

〈표1〉 장애유형별 학생수 (단위 : 명)

구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지체	지체 장애	정서 장애	계
특수 학교	101	174	792	407	176	1,650
특수 학급	3	5	1,218 (정신지체426, 학습장애792)	12	-	1,238
계	104	179	2,010	419	176	2,888

자료 : 우재현, 대구·경북지역 종합장애인 복지대책의 발전방향 1993. 3

〈표2〉 장애학생수

구 분	특수교육대상자	학 생 수	비 고
특수학교	1,759	1,562	취학률 88%
특수학급	1,393	1,254	취학률 90%
계	3,152	2,816	

자료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1994. 9 교육부)

조기교육실은 대략 20여 개 정도이며 10개를 대상으로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뇌성마비 31명, 정신지체 33명, 정서장애(자폐 포함)는 58명, 발달장애 28명, 언어장애 10명, 기타 학습장애 17명으로 총 177명이었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대개 2세에서 8세까지이며 그 중 취학대상연령인 6, 7, 8세의 어린이가 1백2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66%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단 10명만이 장애인 등록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학부형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진학을 원하고 있다.

최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 대상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기교육기관은 몇 년 동안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 또한 늘어나고 있는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기교육실의 경우, 4곳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설로 운영되어 있어 최근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에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다. 수업료 또한 1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을 넘게 부담해야 하므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일반학생(비장애학생)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무교육대상인 국민학교의 취학률이 저조한 가운데 사교육비의 과다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수혜율마저도 떨어뜨리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교육의 현황은 취학대상아동이 30만명을 넘고 있으며 그 수혜율은 20%정도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중학교 취학률은 각각 19.7%, 11.99%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선방안

(1)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도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시·군·구와 같은 기초 단위에까지 두어 모든 특수교육의 중심이 시·군·구 심사

위원회 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시·도 심사위원회는 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위원회에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심사, 취학할 학교의 지정·배치·재심 청구의 심사·결정·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그리고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다.

(2) 조기교육실은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 복지관이나 법인단체에서 위탁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설중심의 기관을 공교육화시켜야 하며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취학대상아동의 실태 파악을 통한 올바른 판정과 학교의 지정·배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수교육진흥법의 취지에 의해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취학율도 높아질 것이며 조기교육실의 법적 정비를 통하여 부모의 수업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2. 공공단체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지역 사업체 및 장애인고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 : 대구 7,713개소 , 경북 6,914개소

고용의무업체 : 대구 94개소, 경북 71개소

고용의무인원 : 2,233 명,

장애인근로자 : 528 명,

고용미달근로자 : 1,705 명

〈표3〉 장애인고용현황 (단위 : 명)

구직개척	구인개척	직능평가	직업알선	취업확정 (취업확정율)	사후지도
5,814	6,928	5,455	5,730	2,448	1,708

자료 : 사업실적 (94. 1.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유발 등을 우려하여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일부사양산업의 사업축소로 고용 감축이 되고 있다.

고용의무업체 중 건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고용의무업체의 고용의무이행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지방노동사무소의 유명무실이 문제점으로 표출되고 있다.

2) 개선방안

(1) 노동부는 장애인 취업에 따른 비용·융자 및 지원사업 강화, 부담금 재활용

(2) 의무고용업체에 대한 의무고용인원달성을 위한 세제감면 등의 장려조치 실시

(3) 일산직업훈련소와 같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소 개설

(4) 특수학교 내 직업훈련시 직종의 전환과 개발

(5)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확대교육 실시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6) 장애인 실태 조사시 고용현황과 고용대상자 파악

(7) 지방노동사무소의 역할강화

3)기대효과

취업실태조사 통계에 의해 의무고용율 달성과 전문인력양성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용이해 질 것이며, 고용장려조치로 기업주의 인식 전환과 고용가능 직종의 보급으로 산·학연대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3.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적 향상과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정책이 전문직 재활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수용보호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혜자의 폭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져 있어 장애인간의 불균등한 혜택을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등급판정이 일관성이 없으며, 범위의 제한으로 수혜자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등급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지며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수혜의 폭을 정하여 놓았다. 그리고 세금감면에 있어서는 너무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이 많아 실제 장애인에게는 크게 복지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에 한해서는 거의 혜택이 없다.

2) 개선방안

(1) 대상자의 확대

(2) 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실질적인 세제감면)

(3) 정신지체장애인에게 타 장애인과 동등한 혜택 부여(자동차 대리운전 허용 및 세제관련 포함)

(4) 전 장애영역 및 장애등급별로 수혜의 폭을 넓힘

3) 기대효과

정책의 확대로 인한 올바른 등록제를 유도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보장될 것이며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보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4. 전국 및 지역별 장애인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본격화된 지방화시대는 각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장애인 수와 등록현황으로는 올바른 예산편성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힘들다.

* 장애인 추정수 (95년 1. 1 현재)
대구 : WHO 기준 10% - 250만(달성군 편입 포함) → 25만명
보건복지부 기준 2.2% → 5만5천명
현 등록장애인 → 12,385명

전체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이 어렵고, 교육·노동·의료 등의 대상자 파악이 안되어 전반적인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2) 개선방안

95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거하여 시·도 단위나 시·군·구 단위로 학령기, 노동가능한 장애인 등 가능한 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수를 파악하고 이에 준거한 예산편성 및 교육·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기대효과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근거 있는 예산편성 및 모든 시책의 기본 틀을 제시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부서별 조정역할 및 조례제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둔다고 명시하고, 시행령 제3조 2항과 제4조에서 심의내용과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제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가 없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비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의과정에서 장애인복지분야를 대변해 주는 과정이 결여되어 올바른 복지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안

(1) 각 지역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상설화한다.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단기적 계획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상의구조에서 벗어나 결정을 통해 실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킨다.

3) 기대효과

장애인복지의 조정역할과 정책적 조례제정 기구 역할, 예산의 올바른 편성, 장애인복지의 장·단기 계획안 작성 및 정책적 건의가 이뤄질 것이다.

6. 건축위원회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강화시킨다. (장애인 접근권의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이동과 각종 시설에의 접근은 편의시설이 장치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각종 문턱과 높은 계단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회화

를 가로막고 있다. 다행히 대구는 94년 지하철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철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장애인단체가 조사한 공공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주로 장애인 이용에 편리한 주계단, 비상구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용 시설 안내 표지판, 장애인 전용주차장 경사로, 장애인용 출입문 등 내부공간 내에서의 편의시설만을 비교한 경우에 90%이상이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건축되어졌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94년에 제정된 편의시설 설치법의 대상건물 기준이 너무 협소하며 강제조항이 약하거나 결여되어 현실가능성이 희박하며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가 국내에 약 10여명 내외로 거의 전무하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부족과 건물주의 인식부족으로 환경개선비용에 따른 예산편성이 어렵다.

2) 개선방안

(1)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①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주된 역할을 알아보면, 직할시·도, 시·군 및 구에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주된 역할은

-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사항
- 관련법(법 제8조 2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현재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은 대개 행정담당자,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기타 관련부서에서 파견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들과의 통합,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주력하고, 관련법의 정비를 통하여 실제적인 관련 지침서, 시행, 전문화된 연구와 시설의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기술적인 지도 및 자문을 담당한다.

(2) 장애인 복지모델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제도적으로 펼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3) 기대효과

최소한의 근린 생활 시설,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효율적 행정관리와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물리적, 사회적 장애의 감소로 사회통합의 기본틀을 제공할 수 있다.

7. 지자제 실시에 따라 장애인종합재활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구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 각 구별 사회복지관이 6개(총 16개 복지관)정도이나 남구에는 복지관이 전혀 없으며(표4), 사회복지관에서 행하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은 실제 열악하고 수혜자의 폭도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에 한 부분으로 귀속되어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 결여, 전시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4〉 대구지역 장애인복지시설 (94년 6월말 현재)

구분	계	재활시설				이용시설	기타
		소계	지체	정신	근로	종합복지관	재활병원
시설(개소)	12	10	4	5	1	1	1
인원(명)	1,246	1,246	582	634	30		

자료 : 대구시 사회과, 1994

청각, 지체, 시각, 정신지체협회, 뇌성마비복지회 등 지부성격의 복지회가 서울과 비교하여 너무 격차가 심하고 영세하여 구별, 지역별 장애인복지의 격차로 인해 지역 장애인에게 올바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종류별로 실시해야 할 복지가 독특한데 기존의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담당하기에는 예산이나 프로그램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개선방안

(1) 각 구별로 1개씩의 복지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2) 각 장애부문별 단종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3) 기대효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으며 장애종류별로 특수성에 맞는 사업과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8. 장애인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한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시행되어야 한다.